

보 상 계 획 공 고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4호선 영동 영동 가리 수해복구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 사 업 명 : 국도4호선 영동 영동 가리 수해복구공사
- 보상내역

소재지	지 번	비고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가리	산41-12, 산40-8	2필지 1,761㎡

- 열람장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3-540-2334) 또는 현장사무실
- 열람기간 : 2024년 5월 21일 ~ 2024년 6월 5일까지
-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별도 통지
- 토지/물건조서 : 보상내역/ 보상내역 토지상의 물건
- 보상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3인 (충북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충청북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을 보상가격으로 결정·협의를 합니다.

10. 감정평가사 추천

- 가. 충청북도지사의 추천 : 충청북도지사는 같은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나. 토지소유자의 추천 : 토지소유자 또한 위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공고 보상 대상 토지 면적(총12,128㎡)의 1/2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추천서 양식 참조)를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 1인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양식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소유자주소·성명	날인(인감)	연락처

- 기타 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43-540-2316)로 문의하시고, 토지조서에 이익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열람기간 내에 이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